

의안번호	제2962호
의결	2025. . .
연월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5. 6. 27.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최두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2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의자 : 최두임, 허옥희, 정영환,
김향숙, 이쌍자, 우정욱 의원
(6인)

1. 제안이유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군의회 보고(안 제6조)

라. 사후관리(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34호

- 예고기간: 2025. 6. 27.(금) ~ 7. 3. [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한 계약
3.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을 목적으로 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간의 법적 의무나 권리 포기가 없고, 예산 또는 재산의 부담이나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보고)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의원 월례회를 통해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후 처음 개최되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